

동화동 청사내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동화동 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장



1. 사 업 명: 동청사 시설 안전용 CCTV 신규 설치
2. 설치목적: 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내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
3. 설치장소: 동 청사내

연번	구분	설치지점(대수)	설치내용	설치목적
1	동화동 주민센터 (중구 다산로36길 100)	지하층 주방(1대) 2층 민원실(1대)	총 2대 ※기존 설치 CCTV 12대 별도	시설안전 화재예방

4. 설치 예정시기: 2021년 3월중

5. 관련근거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6. 행정예고(공고)기간: 2021년 2월 16일 ~ 2021년 3월 7일(20일간)

7. 공고방법: 중구청 동화동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게시

8. 의견제출

○ 동청사 시설안전용 CCTV 신규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동화동 주민센터에 우편(전자우편 포함)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

- 주 소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00, 동화동 주민센터

- 전 화: 02) 3396-8465 / FAX: 02) 3396-8981

- 메 일: minsun@junggu.seoul.kr

※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